

10. 대구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심 사 보 고 서

## 1. 심사경과

- 제출일자 : 2022년 10월 27일
- 제출자 : 대구광역시장
- 회부일자 : 2022년 10월 31일
- 상정일자 : 제297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 
제1차 문화복지위원회(2022년 11월 22일) 원안 가결

## 2. 제안설명 요지(제안설명자 : 청년여성교육장 안중곤)

### □ 제안이유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단독재단법인으로 운영되었던 (재)대구평생 학습진흥원이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으로 통합됨에 따라 대구평생 교육진흥원의 설치 및 지정·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, 상위법인 「평생교육법」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.

### □ 주요내용

- 대구평생교육진흥원의 설치 또는 지정·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 
(안 제10조)

- 대구평생교육진흥원의 업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 규정  
(안 제11조 ~ 제12조)
- 대구평생교육진흥원의 시설 및 지정 절차에 관한 사항 규정  
(안 제13조 ~ 제14조)
-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홍보물 제작·배포에 관한 사항 규정  
(안 제15조)
-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(안 전반)

### 3. 검토보고 요지(보고자 : 전문위원 이규홍)

#### □ 주요 검토사항

- 안 제10조는 대구평생교육진흥원 설치 또는 지정·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,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.
- 안 제11조와 안 제12조에서는 평생교육진흥원의 업무와 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,
- 안 제13조와 안 제14조에서는 평생교육진흥원의 시설과 지정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.
- 안 제15조는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,
- 그 밖에 안 전반적인 사항은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를 하였음.

## □ 검토결과

-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의 재단법인 대구평생학습진흥원이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으로 통합됨에 따른 시도단위 평생교육진흥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.
-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출범(2022.10.1.)에 따라 관련 근거인 「대구광역시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」 부칙이 시행됨으로써 현행 「대구광역시 평생교육진흥조례」의 “제3장 평생학습진흥원”에 관한 사항이 삭제되었으나,
- 「평생교육법 시행령」 제12조 제2항에서 “지방자치단체 평생교육진흥원 설치 및 지정·운영 등에 관한 사항”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에 따라 개정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할 것임.
- 다만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이 평생교육진흥원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인 만큼, 대구평생학습진흥원이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으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논의되고 개정되어, 통합법인 출범과 함께 개정 및 시행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하겠음.
- 최근 우리사회는 평균 수명 연장으로 인구 고령화가 지속됨에 따라 평생교육에 대한 중요성은 커지고 있으며, 시민들의 요구 또한 매우 다양해지고 있어 평생교육 사업 추진에 보다 전문성 있는 접근이 요구된다 하겠음.
-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평생교육진흥본부가 시민들이 평생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 온라인 플랫폼 구축, 문해

교육센터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,

- 단독법인설립을 통해 독립적으로 운영되었던 평생학습진흥원이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으로 통합됨에 따라 업무 추진을 위한 전문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는 만큼,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평생교육진흥본부가 지역의 평생교육 진흥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- 또한 경기침체와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사회 소외계층이 평생학습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수요를 적극 발굴함과 동시에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평생학습 콘텐츠가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하겠음.

#### 4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	답 변
질의없음.	

#### 5. 토론요지

- 없음.

#### 6. 수정안 요지

- 없음.

## 7. 심사결과

- 원안 가결(재석위원 전원찬성)

## 8. 소수의견 요지

- 없음.

## 9. 기타 필요한 사항

- 없음.